

## 제9장 사회·문화 개발계획

### ① 의료·보건

#### 1. 현황분석 및 문제진단

##### 1.1 의료보건시설 현황

- 속초 의료기관은 총 117개소이며 주로 동지역 및 기성 시가지에 분포
- 「2017 OECD Health Data」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11.5병상으로 OECD평균(4.7병상)보다 약2.4배 많음
- 속초시의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9.0병상으로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으며 고령 인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의료시설의 고급화를 위한 계획 필요
- OECD 회원국 중에서 인구 1,000인당 총 병상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13.1병상이며, 독일 8.0병상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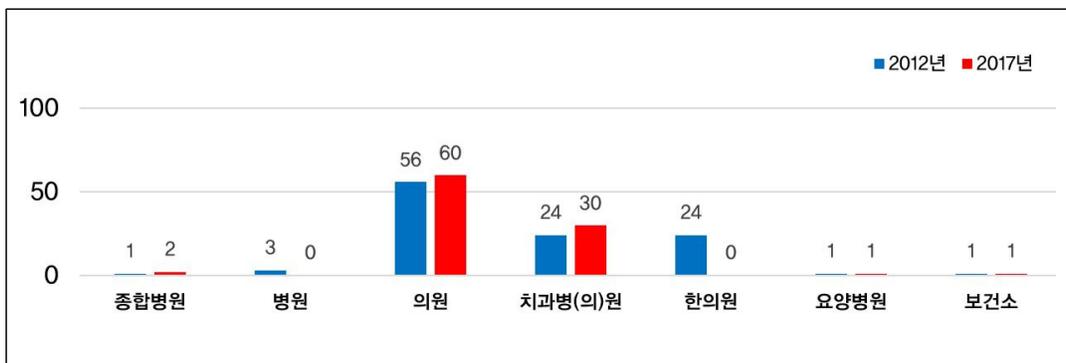
【표 3-9-1-1】 의료기관 현황

구 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병원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2012년	109	1	161	3	476	56	238	24	-
2017년	117	2	470	-	-	60	146	30	-

구 분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2012년	24	29	1	79	-	1	-	-
2017년	24	-	1	130	-	1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1.2 의료인 현황

- 기준년도의 의료 종사자수는 815인임
  - 의사107인, 치과의사37인, 한의사25인, 간호사182인, 간호조무사294인 등
-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수는 인구 천인당 2.3인으로 OECD 평균(3.4)보다 적으며, 속초 의사수는 천인당 1.3인임
- 인구 천인당 간호인력은 6.9인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간호사 수 9.0인보다 부족
- 우리나라는 의사수, 간호사수가 인구 천인 기준으로 OECD 평균치 보다 낮음

【표 3-9-1-2】 의료인 현황

구 분	계	의 사		치과의사	한 의 사	약 사
		상근의사	비상근의사			
2012년	763	112	-	28	26	3
2017년	815	107	-	37	25	3

구 분	조산사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비 고
2012년	-	228	210	153	3	
2017년	-	182	294	162	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9-1-3】 OECD 건강지표

구 분	천인당 의사수	천인당 간호사수	천인당 의학계열졸업자수	비 고
평 균	3.4	9.8	12.6	
한 국	2.3	6.9	7.6	
일 본	2.4	11.3	6.8	
멕시코	2.4	2.9	13.5	
캐나다	2.7	10.0	7.7	
영국	2.8	7.8	12.9	
프랑스	3.2	3.2	9.5	
네덜란드	3.6	3.6	16.0	
스페인	3.9	3.9	14.5	
덴마크	4.0	4.0	21.5	
독일	4.3	12.9	12.0	
스위스	4.3	4.3	11.2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OECD 건강지표 주요지표 분석 결과, 2017년

## 1.3 문제점 및 여건변화

### 01 의료시설

- 의료시설 및 병상수는 양호하나, 노인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 특수병원의 부재로 대도시에서 진료를 받는 불편이 존재
- 양적인 확충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설치 필요
- 의료기관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시설이용의 형평성이 떨어짐

### 02 의료인

- 의료시설의 효율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 및 향후 인구고령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 확충 필요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병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 2.1 기본방향

#### 01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의 제고

- 수요에 따른 의료서비스 확충
-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의료인력의 확충을 통해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비
-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의 적정배치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

#### 02 특수의료시설 확충 및 치료사업의 확대로 의료 서비스 전문화

- 인구증가에 따른 특수병원(노인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의 확충
- 연령층별, 장애 유무별 등 서비스이용의 전문화
- 생업에 바쁜 농어촌 주민 및 노인층 순환진료
- 신설되는 의료시설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진료 효율성 제고

## 03 생활권별 균형있는 의료시설배치

- 생활권, 인구밀도, 접근성 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확충
  - 생활권별 의료시설을 배치하고 종합병원 및 병원 배치를 통해 2·3차 진료 전담
- 의료인구의 적정배치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시민의료서비스 향상
- 보건예방 행정의 적극추진과 방역활동의 생활화
- 교동지역에 집중된 의료시설이 시가지 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시스템개발

## 04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 시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증가하는 고령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전문의료기관을 설치하고 노인종합복지센터와 연계한 노인복지관련 프로그램 개발
- 건강관련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및 공공보건소 등에 관련자료 구비
-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력과 시설장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05 의료·보건관련 정보망 확충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과 무료진료 등 각종 공지사항을 보건소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히 공지함

## 2.1 지표설정

- 병상 당 인구기준은 250~900인으로 속초시는 2017년 현재 병상 당 112인(병상수 : 746병상)으로 기준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목표연도 2040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병상당 122인이라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현재보다는 혼잡한 진료환경이 예상됨
-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의료보건제도의 확대 등으로 속초시의 의료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연도인 2040년에는 병상 당 100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 목표연도인 2040년 의사는 1.56천인당/의사, 병상수는 100인/병상을 기준으로 하여 의사 141인 병상은 910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
- 보건소는 생활권별 1개소 이상으로 설치되어 교외 지역의 의료서비스 거점으로 활용

【표 3-9-1-4】 의료시설 지표설정

구분	단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구	인	83,213	85,268	87,959	89,860	90,930	
종합병원	개소	2	2	2	2	2	
병상	1병상당 인구 수	인/상	112	100	100	100	100
	병상 수	상	746	853	880	899	910
의사	의사당 인구 수	인/의사	778	641	642	642	645
	의사 수	의사	107	133	137	140	141

주) 병상수는 강원도 평균지표보다 양호한 속초시 지표를 반영하여 현재수준 유지  
의사수는 강원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강원도 천인당의사수 지표를 적용

### 3. 실천전략

#### 01 종합병원의 확대 및 의료시설의 균형적 배치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적절한 균형설치 유도
- 종합병원은 생활권별 인구규모에 따라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배치하고 병원 및 의원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진료체계 확립
-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진료권을 설정하여 진료망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부문과 민간 의료부문의 상호 협력하에 진료권역을 구체적으로 분담함으로써 계층별 진료체계를 확립
- 종합병원의 유치에 병원의 입지와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병원 분원설치 유도
- 지역주민이 적은 지역은 보건소 확충을 통하여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균형개발 유도

## 02 응급의료 지원의 강화

- 속초시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 시차원의 응급의료체계 구성하여 의료서비스 확충
- 응급의료지원은 민간기관의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시 차원에서 공공응급체계의 확립

## 03 의료보건도시계획의 수립

- 의료복지는 지역사회 특성
- 생활권별 도시보건지표 개발 및 보급
- 인근 도시간 건강정보 연계
- 의료보건 관련 기관들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 04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확대

-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방문보건센터 및 지정방문 의료서비스 등  
특정기능을 강화한 특화보건소 설치
- 의료 복지 및 감면혜택 지원
- 보건소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의 소극적 보건소 역할 탈피
  - 무료 건강검진, 질병 예방과 치료, 물리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방문보건 서비스 등의 기능 강화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지역보건의료센터로서의 실질적 역할 담당
  - 단순한 예방업무 위주에서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전환
  - 금연, 절주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 및 확대 시행

## 05 의료보건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역과의 연계

- 속초시 보건사업 및 시민운동 활성화
- 의료복지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집권적·획일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 및 주민의 주체성에 근거하여 운영
- 보건의료의 연대 및 제휴를 통하여 지역보건활동, 재가복지 활동에 진전을 꾀하고 보건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체계적인 정비 유도
- 지역의료시설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연계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한 학교,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 06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특수병원 설치 유도

- 노인인구의 의료체계 강화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특화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설치
-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문병원 유치 및 한방종합병원 유치
- 노인 도우미 간병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노인간호 전문인력 육성

## 07 보건·의료 정보화 및 의료전달 체계 강화

- 민간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입지하기 어려운 외곽지역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보건의료 취약성 해소
- 생활권별 인구규모 및 인구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양질의 의료시설 공급
- 보건지소에 의료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의료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비상서비스체제 구축
- 오지 또는 노인들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호출서비스 제공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정보체계와 지역복지시설간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 보건·복지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2 사회복지부문

1. 현황분석 및 문제진단

01 사회적 약자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준연도 생활보호 대상자 수급가구는 3,068호로 가구원 수는 4,443인임

【표 3-9-2-1】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구 분	합 계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호)	가구원수(인)	가구(호)	가구원수(인)	가구(호)	가구원수(인)	시설수	인원
2014년	2,744	4,141	2,516	3,628	228	359	15	154
2015년	3,073	4,630	2,898	4,216	175	260	15	154
2016년	3,173	4,662	3,017	4,281	156	227	15	154
2017년	3,068	4,443	2,899	4,059	169	229	15	15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속초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434명이며 그 중 기초노령 연금대상자수는 9,553명으로 69.62%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음

【표 3-9-2-2】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구 분	전체노인			수급자수			수급률(%)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4년	12,261	4,947	7,314	9,038	3,231	5,807	73.71	65.31	79.40
2015년	12,487	5,060	7,427	9,087	3,260	5,827	72.77	64.43	78.46
2016년	12,752	5,139	7,613	9,172	3,270	5,902	71.92	63.63	77.53
2017년	13,434	5,494	7,940	9,553	3,426	6,127	70.95	62.36	76.88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장애인 등록현황

· 속초시의 장애인구는 4,958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3급 이상의 장애로 관리가 시급한 인원은 1,829명으로 36.9%의 비중을 차지함

【표 3-9-2-3】 장애인 등록현황

구 분	성별			장애등급						
	합계	남	여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14년	4,889	2,833	2,056	4,889	359	685	807	836	1,129	1,073
2015년	4,827	2,796	2,031	4,827	357	667	799	825	1,105	1,074
2016년	4,851	2,808	2,043	4,851	356	673	794	834	1,103	1,091
2017년	4,958	2,876	2,082	4,958	355	657	817	833	1,155	1,141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 속초시의 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는 총 560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759명으로 나타남

【표 3-9-2-4】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단위 : 가족, 명)

구 분	합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국가보훈법 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2014년	637	1,590	422	1,055	215	535	-	-
2015년	593	1,466	349	866	544	600	-	-
2016년	576	1,420	186	614	390	806	-	-
2017년	543	1,319	169	560	374	759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2 노인복지

- 속초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86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2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표 3-9-2-5】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구 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2013년	81	1	79	1
2014년	81	1	80	-
2015년	85	1	84	-
2016년	87	1	86	-
2017년	86	1	85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9-2-6】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구 분	합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2013년	12	409	367	5	350	312	7	59	55
2014년	13	426	376	5	358	307	8	68	69
2015년	13	434	380	5	363	311	8	71	69
2016년	14	496	396	6	425	327	8	71	69
2017년	14	496	399	6	424	344	8	72	5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9-2-7】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구 분	합계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수	이용 인원	종사 자수	시설 수	이용 인원	종사 자수	시설 수	이용 인원	종사 자수	시설 수	이용 인원	종사 자수
2013년	12	429	201	5	320	157	5	78	37	2	31	31
2014년	12	386	152	5	311	123	5	55	22	2	20	20
2015년	12	426	146	5	320	115	5	79	27	2	27	27
2016년	12	458	159	5	359	127	5	74	25	2	25	25
2017년	12	487	195	5	371	153	5	88	34	2	28	28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3 여성복지

- 속초시의 여성복지시설은 소외여성복지시설 1개소, 여성폭력상담소2개소를 운영중이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시설은 전무하여, 여성복지에 대하여 전문화 및 시설확충이 필요함

【표 3-9-2-8】 여성복지시설

구 분	소외여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현재인원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현재인원
2013년	1	58	54	9	-	-	-	-
2014년	1	61	64	6	-	-	-	-
2015년	1	38	41	3	-	-	-	-
2016년	1	54	55	2	-	-	-	-
2017년	1	46	38	10	-	-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9-2-9】 여성폭력상담소

구 분	합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2013년	2	1,437	1	872	1	565	-	-
2014년	2	1,407	1	1,008	1	399	-	-
2015년	2	1,546	1	950	1	596	-	-
2016년	2	1,605	1	1,201	1	404	-	-
2017년	2	1,743	1	1,337	1	406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04 아동복지

- 2017년말 현재 속초시의 양육·보호치료시설은 전무하며 사회적 여건 변화등을 반영하여 확충이 필요함

【표 3-9-2-10】 아동복지시설

구 분	합계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기타	
	시설수	입소자	시설수	입소자	시설수	입소자	시설수	입소자
2013년	1	1	-	-	-	-	1	1
2014년	1	4	-	-	-	-	1	4
2015년	1	2	-	-	-	-	1	2
2016년	2	11	-	-	-	-	2	11
2017년	2	9	-	-	-	-	2	9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05 장애인복지

- 2017년말 현재 속초시의 장애인복지 생활시설은 3개소가 있으며, 장애복지에 대하여 전문화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함

【표 3-9-2-11】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구 분	합계		연말 현재 수용인원 (장애종별)				
	시설수	입소자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기타
2013년	3	20	3	-	-	17	-
2014년	3	20	3	-	-	17	-
2015년	3	19	1	-	-	15	3
2016년	3	23	4	-	-	18	1
2017년	3	22	3	-	-	19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1.2 문제점 및 여건변화

### 01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속초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기준 말 1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꾸준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전체인구의 18.8%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에 대비 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출산율의 저하로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0.2%로 고령자인구 증가율 2.9%에 비해 낮아 노인 부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측됨
- 저출산·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라 새로운 사회복지수요와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의 사회정책 변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02 가족구조의 변화

- 3~4인 가구 중심에서 1~3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로 이혼·재혼 가족,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등장
-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부모 부양역지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노인, 아동 등 돌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커짐에 따라 남성의 육아를 위한 사회·문화적 해결 방안, 자영업자 등에 대한 양육지원 방안이 필요함

### 03 현대사회 복지개념의 변화

- 과거 사회복지의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빈곤에서 탈피하는 전통사회의 보완적 사회복지 개념에 한정됨
- 최근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는 모든 시민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보편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음
- 복지에 대한 인식이 수단적 개념이 아닌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목표로 인식하는 추세로 공공지원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중시하고 있음

04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복지서비스 공급 필요

-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서비스 확충 전략 필요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필요

05 사회복지서비스 전문화

- 인구고령화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정비와 확충 및 전문화가 필요
-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양적인 문제해결을 민간에 의존하는 경향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06 복지프로그램 미흡

- 노인복지와 의료서비스를 연계 공급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필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지원강화와 그에 대비한 아동보육시설의 확충 필요
- 외국인 가구 등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문화복지시설 부족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 부족

2.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2.1 기본방향

01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질적 확충

- 인구증가, 도시규모의 확대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필요
- 복합시설을 검토하여 시설의 효율화, 이용체계 강화
-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잠재인력의 직업능력 개발
-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확충 필요
-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문제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로원,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설의 확충

02 사회적 약자 복지시설 확충

- 어린이, 임산부, 근로자, 노인, 신체장애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 및 계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공급으로 다양한 계층에 혜택 부여
- 장애인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직업 알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지속적인 의무고용제도 확대 실시와 참여기업에 특정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여성의 사회 참여도 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 시스템 구축
- 청소년의 심신 단련과 교양 증진 및 정서순화를 위한 청소년 여가시설 확대 설치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방안 강구
- 사회복지기관, 사회교육시설 등의 설치
-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신설 운영
- 청소년의 선도와 새로운 여성복지 욕구에 대비한 시설의 확충

03 생활권별 균형적 서비스 공급

- 복지시설 신설시 균형적이고 종합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권별 배치 필요
- 도시규모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신설

2.2 지표설정

【표 3-9-2-12】 사회복지시설 지표설정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아 동 복 지 시 설	2	2	2	2	2
청 소 년 회 관	3	3	4	4	4
종 합 복 지 회 관	1	1	1	1	1
여 성 복 지 시 설	1	1	1	1	1
노 인 복 지 시 설	100	103	106	108	110
장 애 인 시 설	3	3	3	3	3

주) 강원도 복지시설(2013~2017년도) 만인당 각 개소수를 적용

## 2. 사회복지시설 계획기준

### 01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7. 8. 3., 2018. 3. 1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2018. 3. 13.>

####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1. 6. 7.>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2011.6.7.>
-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7. 4. 11.,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8. 3. 13.>

## 02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① 삭제 <2019. 1. 15.>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 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 ① 삭제 <2019. 1. 15.>
-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03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9. 1. 15.>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 04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2019. 1. 15.>

#### 4. 실천전략

##### 01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인 복지기반 강화

######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배치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목표 연도에는 각 동별로 1개소씩 균등하게 배치되도록 계획
- 저소득층 노인 가족 전반에 대한 가족돌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봉사원, 도우미 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확충
-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비도시지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인환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 미래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시설보호측면에서 노인층의 소득, 주거, 의료 보건차원의 지역사회 서비스향상으로 전환하여야 함
- 도·농간 노령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감안하여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원 배치
-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은 144개소 배치

###### ■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지원 확대

-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개인적 노후생활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나 소득수준의 저하,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자녀들의 부양의식 저하 등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 내 하천정화, 가로수 및 화단 정비 등 공공근로사업에 노인인력을 활용 시 노인특성에 맞도록 배치하며 손주돌보미 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노인 스토리텔러 등 전문적 창업모델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창업을 유도함
-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앞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노인동아리, 소모임 활성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노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임
- 노인일자리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주요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 02 어린이·청소년 보호 및 인권신장 기반 마련

### ■ 아동복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탁아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아시설의 확충
- 탁아시설의 확충을 위해 저소득층 및 인구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신규 및 시설 전환을 통한 탁아시설을 확충 배치함
- 어린이회관, 청소년회관 등은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놀이 공간 제공

### ■ 청소년 문제의 사전적 예방

-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신고상담체계 구축
- 약물남용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술, 약물 등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약물 복용 청소년의 치료를 위한 자활센터설치
-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유흥가의 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한 보호순찰 강화

### ■ 근로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 근로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순회지도와 신고체계 등의 보호제도를 제정하고, 근로시간외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 ■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 지원 및 예방

- 가정폭력에 의한 아동의 신체적·성적 학대와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시적 보호서비스 제공

## 03 여성 임신·출산 및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 출산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영유아의 지속적 관리와 체계적 보육 지원을 위해 영유아 등록관리를 확대하고, 여성취업자들의 안정적 출산장려를 위해 건강검진 지원 확대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양육휴가 의무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양육지원 확대(대체인력 등)방안 마련

## ■ 돌봄의 사회적 분담

- 출산장려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국·공립 탁아 보육시설을 생활권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확대·배치하고, 야간보육, 방과 후 아동지도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
- 부족한 보육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 여성 복지시설 확대

- 여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모자보호시설, 부녀직업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의 부녀복지시설을 1개소 배치
- 여성회관을 통하여 생활개선사업, 교양지도사업, 자원봉사자의 조직운동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경력단절 여성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

## ■ 육아 지원 강화

- 육아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을 건립하여 시설 보육 이외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가정양육부모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 육아비용의 지원과 장학금 지급, 사교육 저감 대책 마련 등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 04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 ■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 기준 강화

- 장애인들의 재활·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인으로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사회보호기능을 확대 및 장애인의 수용·보호시설확충 등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강구함
- 장애인 수용·보호를 위한 복지시설은 생활권을 고려 배치하여 장애인의 재활에 관련한 각종 정보 및 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애인 수용 및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은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재활보호체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은 지역별로 적정 배치하여 이용의 편리를 도모함
- 종합복지관을 설립하여 복지행정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단위로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 열악한 장애인시설을 정비하고, 신축건축물에 대한 장애인시설 기준 강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 ■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 취업알선 정보망의 확보를 통해 취업알선 기능 강화
- 의무고용대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 활동보조제도 강화

- 장애인 활동보조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계보조 수당 현실화
- 장애인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비를 확대·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 자녀의 자립자금 대여 등 지원책 마련

##### ■ 장애인 우선시하는 공공시설 설치

- 보행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 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한 조건의 사람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 저상버스의 도입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전동휠체어 충전소 등을 확대·설치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 구현

05 돌봄이 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영역별 대응방안

■ 돌봄정책 탈가속화 수준에 따른 정책방향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
- 민간이 제공하는 돌봄기관의 경우, 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
- 돌봄기관·시설에 종사자 고용안전성, 근로조건과 처우 등 근무여건 개선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공케어(care)체계 구축

- 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 초기대응 강화
- 비대면 디지털행정시스템 마련 및 상시운영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기 교육프로그램 마련
- 비대면 근무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분야의 안전성 강화

【표 3-9-2-13】 돌봄정책의 추진방향

<p>1. 복지기술(WT)을 통한 융합적·효율적 사회서비스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기술(WT)을 통한 융합적·효율적 사회서비스 혁신</li> <li>· IT기기 활용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li> </ul>
<p>2. 사용자 주도의 다방향 Multi-interactive 사회서비스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의 주도적 역할(the public as more partners)</li> <li>· 사용자 경험 (User Interfaces &amp; Experience) 기회 확대</li> </ul>
<p>3. 결합형 비즈니스 모델 적용으로 사회서비스 혁신 및 기관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합형 비즈니스 모델 적용으로 사회서비스 혁신</li> <li>·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화 도모</li> </ul>
<p>4.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산 및 체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확대</li> <li>·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업(co-creation)체계화</li> </ul>
<p>5.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li> <li>· 사회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커뮤니티 연계 및 육성</li> </ul>

06 성별 균형적인 참여가 가능한 지역사회 구현

■ 양성평등정책 추진협의회 설치 및 전문성 강화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마련
- 지자체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계자, 연구기관, NGO,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 주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 여성 임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 임원 목표제」 등의 도입 권장
- 공공기관 내·외 다양한 여성 인재 임용을 통해 획기적으로 확대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

【표 3-9-2-14】 협치민관협의체 (총괄 거버넌스)

<p><b>1. 성 평등 정책추진기반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li> <li>-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li> <li>-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 설치</li> <li>-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간 협력</li> <li>- 지역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활성화, 성인지 통계 구축</li> <li>-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li> </ul>
<p><b>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li> <li>-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li> <li>-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촉진</li> <li>·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li> <li>-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li> <li>- 여성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목표 공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li> </ul>

<p><b>3. 지역사회 안전증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li> <li>-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특성을 반영한 이동여건 조성</li> <li>- 도시기반 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li> <li>·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역량 강화</li> <li>-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li> <li>- 여성의 지역안전 유지역량 강화</li> </ul>
<p><b>4. 가족친화 환경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li> <li>-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양립문화 정착</li> <li>-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li> <li>- 가족친화기업 확대</li> <li>·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강화</li> <li>- 돌봄서비스 내실화와 돌봄인프라 접근성 향상</li> <li>- 마을단위 돌봄 확대</li> </ul>
<p><b>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li> <li>- 다양한 분야의 마을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공간 확대</li> <li>- 지역사회 여성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li> <li>· 모든 분야의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li> <li>- 단체 및 자원활동 등 지역사회 여성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li> <li>-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참여 확대</li> </ul>

출처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p. 14.

## 07 안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안전문화 계획

### ■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지,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맞춤형 보행 안전환경 조성
- 노숙인 국고지원시설 신·증축확대, 노인보호 전문기관 증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와 가스감지센서 설치 지원 등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과 피난약자에 대한 주거시설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 범죄 피해 우려지역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통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강화

###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 유아원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 과정 내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체계적 교육
-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안전약자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전체험 교실 운영을 확대
- 어린이가 직접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참여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제고

###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

- 장애인 및 노약자 교육훈련 체계 개선, 위기상황 탈출 훈련 프로그램과 필요한 장비의 개발,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자립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강화
- 모바일 기반 장애인 재난경보와 유도시스템 개발 등 21세기 새로운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

3 교육부문

1. 현황분석 및 문제진단

1.1 교육시설 현황

- 유치원 9개소, 초등학교 12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3개소로 변화없으나, 경동대학교 내 속초캠퍼스의 통폐합으로 사실상 폐교상태
- 2017년 학생수는 총 9,982인으로 2017년 기준 속초시 인구 83,213명 대비 8.3%를 차지함

【표 3-9-3-1】 교육시설 현황

구 분	학교수	학급 및 학과수	보통 교실수	학생수(인)	교직원수(인)			교원1인당 학생수(인)
					소 계	교 원	사무직원	
2014년	34	480	466	15,623	1,077	929	148	16
2015년	31	504	450	18,427	1,160	979	181	17
2016년	29	433	605	9,982	879	770	109	13
2017년	29	433	605	9,982	869	770	99	13
2018년	29	433	606	9,608	873	771	102	12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인)	
계	29	433	9,608	873	11	
유 치 원	9	33	596	61	13	
초 등 학 교	12	190	3,892	329	14	
중 학 교	4	96	2,389	201	13	
고 등 학 교	소 계	3	91	2,612	224	13
	일 반	3	91	2,612	224	13
	전 문	-	-	-	-	-
대 학 이 상	소 계	-	-	-	-	
	전문대학	-	-	-	-	
	대학(교)	-	-	-	-	
기타학교	1	23	119	58	2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주) 교육시설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됨

## 1.2 기타교육시설 현황

- 속초시의 사설학원은 128개소, 독서실은 12개소 도서관은 교육문화관 1개소, 교육도서관 1개소, 시립도서관 1개소로 총 3개소를 보유하고 있음

【표 3-9-3-2】 사설학원 및 독서실

(단위 : 개수)

연별	사설학원					독서실		
	학교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수강자수	강사수	강의실	독서실수	열람실수	열람 좌석수
2013년	139	9	7,093	354	528	24	126	1,868
2014년	147	8	9,180	262	571	12	66	982
2015년	111	7	6,456	228	327	11	10	-
2016년	116	7	4,486	107	383	11	54	-
2017년	119	9	10,491	301	438	12	61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3-9-3-3】 공공도서관

(단위 : 개수)

연별	도서관 수	좌석수	자료수			연간 이용객수	직원수
			도서	비도서	연속 간행물		
2013년	2	1,524	274,609	0	0	477,498	27
2014년	2	1,190	238,056	22,420	274	485,590	28
2015년	3	1,393	263,160	22,739	336	522,864	38
2016년	3	1,415	271,352	16,845	337	673,496	33
2017년	3	725	279,326	23,524	192	562,317	31
속초교육 문화관	1	150	147,600	14,755	84	243,769	19
속초교육 도서관	1	258	88,029	6,963	43	115,641	7
속초시립 도서관	1	317	43,697	1,806	65	202,907	5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1.3 문제점 및 여건변화

#### 01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인식부족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날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생교육복지체제 기반구축 미흡
- 자치단체, 유관기관, 학교, 기업, 개인학습자 등 사회 각 부문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환 및 역할 분담 방안 수립이 필요

#### 02 지역인재 유출 및 대학교육과 지역경제 낙후문제

- 지역대학의 인프라 부족과 지역산업구조 역시 특화되지 못해 지역의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심각함
- 인문·사회분야의 고급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분야의 인력수요 취약
- 학교주변 교통, 식품 등의 유해환경 및 학생 복지시설 부족 등 열악
- 외국어고등학교, 전문고 및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학교 부재
- 경동대학교(설악URIE캠퍼스) 폐교 및 4년제 종합대학교의 부재
- 지역의 문화예술 및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미흡
-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 부족

#### 03 교육환경의 확충과 내실화 문제

-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의 연계미흡, 학급당 학생수 감축추세에 따른 학교 신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행정구역별 학교시설의 불균형 현상 초래
-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학습이 미흡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중도탈락자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미비함
- 학생들의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 사물함 부족, 교실 냉난방시설의 부족, 급식시설의 부족, 화장실 문제 등 학생들의 기본이 되는 시설들이 미비한 실정
- 학생의 실질적인 진로교육 내실화를 도모해줄 수 있는 체제 미구축
- 학교주변의 유흥, 위락업소의 증가로 교육환경 저해
-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고 교육격차가 심화됨

#### 04 평생교육의 중요성 대두

-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언제든지 재취업, 전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게 됨
-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수의 증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제2~3의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절실함
- 공무원, 교사 등 기존 담당업무를 가진 인력이 부업으로 평생교육을 담당하여 평생교육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 탓에 프로그램 개발, 관리, 평가, 상담, 조정 등 평생교육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됨

#### 05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 모색

-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마이스터고,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기숙형 고등학교, 자율형 공·사립 고등학교) 등 특성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역 내 특성화목적의 중등교육기관 부재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인재의 전출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 2.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 2.1 기본방향

#### 01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계획추진

-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별적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자발적 참여추진
- 지역특화분야의 다양한 학습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확보
-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호연계 가능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영역별 전문가 양성

#### 02 정보기술을 통한 지식 인프라 구축과 교육컨텐츠 개발

-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기술 인프라와 가상교육체제 구축
- 컨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 03 학교교육 여건 확충

- 학교규모의 적정화
  - 새로운 학교(특목고, 소규모 대안학교 포함)를 설립하여 적정규모로 유지, 다양한 형태의 수업 실시, 학교 재배치, 보조교사 활용
- 학교주변 소음공해를 막는 법적 장치 마련
-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신축 감소
  -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기존학교로 통학이 불가피
  - 통학거리 증가에 따른 통학로 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 04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 지역특화산업 진흥을 위한 산·학·연 교류협력 강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
- 우수인재가 지역의 기업으로 원활히 공급되는 체계구축
- 산업 현장화, 전문화된 인적자원의 양성과 공급에 기여함
- 우수학생의 이공계 유인, 대학환경의 개선과 산업의 수요 반영 및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로 기업이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의 취업 촉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

## 05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 여성 인적자원개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직접적인 직업체험을 통하여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체계적, 집중적으로 이를 전문화하게 하여 여성의 직업세계 진입과 발전을 보다 용이하게 함
- 여성지원정책의 강화
  -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이나 복지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는 기업, 여성고용 우수 기업은 여성능력 활용의 선도적 역할자라는 측면에서 지원 필요
- 지역사회 조건강화 및 인프라 구축
  - 여성취업 관련된 산발적인 기구를 통합하여 효율성 추구
  - 공공기관의 연계강화, 지원체계,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함으로써 지역여성의 인적자원 활용의 협응적 체계구축
- 가족친화기업 발굴 및 지원
  - 남성의 돌봄 참여가 가능한 지역사회조성
- 공공일자리 분야에서 누적된 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 채용 할당제 실시

## 2.2 지표설정

- 초등학교는 OECD 교육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시 목표연도에 12개소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현재 초등학교는 12개소)
- 신설 학교는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수 및 학생수의 추가 확보 시기 결정
- 학생수 추계는 5세 단위를 기준으로 학년별로 배정하고 학교당 학급수는 현황을 반영
- 현재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가 위치하나 폐교상태임
- 대학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최적의 부지선정 및 매입지원, 기반시설 조성 등 4년제 대학유치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표 3-9-3-4】 교육시설 지표설정

구 분		단 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초 학 교	학 생 수	인	3,870	4,184	3,802	3,635	3,704
	학 급 당 학 생 수	인/학급	20.6	21.0	21.0	21.0	21.0
	학 급 수	학급	188	199	181	173	176
	학 교 당 학 급 수	학급	15.7	16.6	16.5	15.7	16.0
	학 교 수	개교	12	12	11	11	11
중 학 교	학 생 수	인	2,589	2,220	2,261	1,920	1,905
	학 급 당 학 생 수	인/학급	25.4	22.9	23.1	23.1	23.0
	학 급 수	학급	102	97	98	83	83
	학 교 당 학 급 수	학급	25.5	24.3	24.5	27.7	27.7
	학 교 수	개교	4	4	4	3	3
고 학 교	학 생 수	인	2,837	2,426	2,125	2,095	1,873
	학 급 당 학 생 수	인/학급	30.8	23.1	23.1	23.0	23.1
	학 급 수	학급	92	105	92	91	81
	학 교 당 학 급 수	학급	30.7	35.0	30.7	30.3	27.0
	학 교 수	개교	3	3	3	3	3
대 학 교	개교	1	1	1	1	1	

주) 유치원은 학교산정에서 제외, 대학교는 학생수 및 학급수 산정에서 제외  
 OECD 학급당 평균 학생수 : 초등교육(21명), 전기중등교육(23명)

3. 실천계획

01 교육기반 선진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교육기반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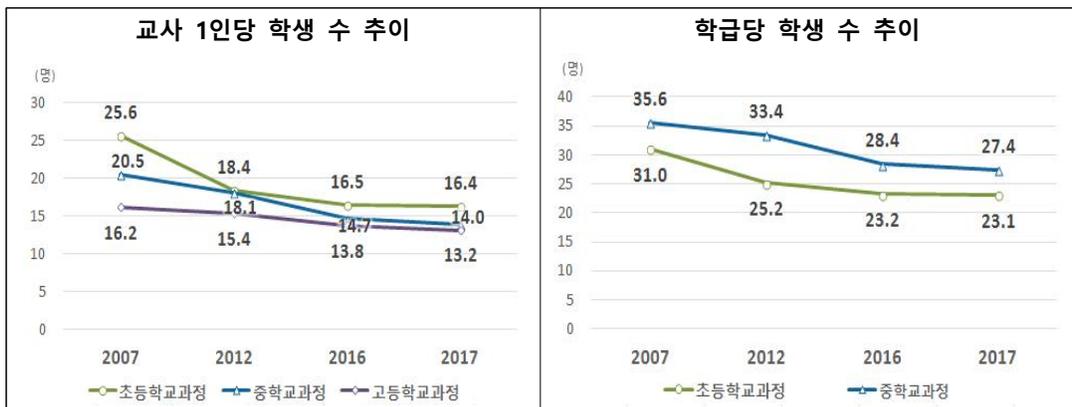
- 교육여건을 OECD 국가수준으로 개선
- 학급당 학생수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신설 계획 수립
- 학교 주변 유해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표 3-9-3-5】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교육	중학교
전 국 (인)	16.4	14.0	13.2	23.1	27.4
속 초 시 (인)	13.6	13.4	13.8	15.7	25.5
OECD평균 (인)	15.2	13.3	13.4	21.2	22.9

주1) OECD EDU. DATA, 2017  
 주2) 통계연보, 각 년도(2017년)

【그림 3-9-3-1】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 변화추이(전국)



출처 :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 교육환경의 개선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통합 교육 활성화
-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의 특수목적학교 유치
- 4년제 종합대학교의 유치로 교육의 터전 제공 및 교육 경쟁력 제고
-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 강화

## 02 학교환경의 질적 개선

### ■ 학교기반의 선진화

- 학생 체형에 맞는 고품질의 책걸상과 사물함을 공급하고, 냉난방 및 급수·화장실 등의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인쇄물 및 구체물, 각종 영상매체자료, 시청각 기자재 등 교육보조기구의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 ■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개선

- 학교보건과 위생,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업소의 이전 적극 추진
- 지속적인 학교 주변 유해환경점검 및 캠페인 등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환경이 취약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 정보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스마트 스쿨(smart school) 구현

- 정보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학생이 수업시간에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장기적 측면에서 IT-인프라를 학교에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서비스 기술이 접목된 학교로 개편
- 수업시간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토론이 가능한 기반시설 구축·확대

## 03 교육환경의 다양화

### ■ 다양한 학습 욕구의 해소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 수준별 맞춤 학습, 논술캠프, 독서 교육, 스포츠클럽 등 아카데미 신청학생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모집하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맞춤별로 선정 및 운영
-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 ■ 학교간 협력체계 구축

- 소생활권별 학교간 상호발전과 학생지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지역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시스템 운영

- 글로벌시대 영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점점 더 가중
-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시설과 강사, 수준 높은 프로그램 등 영어교육을 제공 하는 국제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절감
- 또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해 무상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여 영어교육의 격차 해소
- 방과 후 아카데미와 연계 추진하며, 영어교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4 문화·체육시설 부문

1. 현황분석 및 문제진단

1.1 문화시설 현황

01 박물관 현황

- 속초시의 박물관은 속초시립박물관 1개소로 총 13,137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1만명 이상의 입장객이 방문하고 있음

【표 3-9-4-1】 박물관 현황

(명, 점)

구분	입장자	소장품							
		합계	금속	토제	석	나무	지	사적	기타
2012년	102,769	8,165	1,374	171	602	1,106	3,097	300	1,515
2017년	113,877	13,137	2,391	213	1,020	1,284	6,106	420	1,703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02 문화시설 현황

- 공연시설은 4개소(공공공연장 1개소, 민간공연장 2개소, 영화관 1개소)임
- 전시시설은 미술관 1개소가 있으며, 기타시설로 문화원 1개소가 있음

【표 3-9-4-2】 문화시설 현황

구분	공 연 시 설				전 시 실		기 타 시 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스크린수						
2012년	1	-	1	5	1	-	1	-	-
2017년	1	2	1	5	1	-	1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03 체육시설

- 2017년도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1개소, 축구장 2개소, 테니스장 1개소 등 59개소가 있음
- 2017년도 신고체육시설은 125개소로 총 1개소 감소함
- 2017년도 등록체육시설은 골프장2개소로 2012년과 변함없음

【표 3-9-4-3】 체육시설 현황

구분	공공체육시설											
	합계	육상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간이 운동장	구기 체육관	수영장	국궁장	승마장	조정 카누장	전천 후 게이트 볼장
2012년	45	1	2	1	1	34	2	-	1	1	1	1
2017년	59	1	2	1	1	45	2	1	1	1	1	3

연별	신고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합계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합계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2012년	126	3	20	20	9	70	-	-	4	2	2	-	-
2017년	125	5	19	19	11	67	-	-	4	2	2	-	-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1.2 문제진단 및 여건변화

### 01 문화시설

-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증가하였으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
- 복지회관, 박물관, 소공연장 등 문화시설 부족

### 02 체육시설

- 대부분이 신고체육시설로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체육시설 부족
-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증가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수용할 시설이 부족
- 생활 속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형 체육시설의 필요성 증가

## 2.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 2.1 기본방향

#### 01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문화도시 경관 조성, 지역문화 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도시 환경 조성
- 문화적 핵심거점을 설정하고 집중 육성함으로써 문화적 흐름을 도시 전체로 확산
- 기보유한 역사적 시설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 지역문화재가 입지하고있는 주변에 대한 개발규제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주변환경 정비
- 문화도시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확충
-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도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속초시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
  - 시민문화예술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방적인 다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국제적 시민교육 확대

#### 02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체육활동의 기회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발굴하고 동호회 활동 적극 지원
-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른 시민 참여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2.2 지표설정

#### 01 문화시설

- 일반시민의 정서함양 및 편리한 이용을 고려한 시설 배치
- 지역사회 및 지역공간을 특화할 수 있는 문화시설 설치로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정체성 확립

- 공공도서관은 목표연도까지 1개소를 설치(총 3개소)하여 시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
- 박물관은 인구증가에 따른 설치보다 신규 전시테마 등의 이슈 발생시 추가설치 검토
- 공공공연장은 4만인당 1개소 설치로 목표연도에는 총 2개소로 계획
-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와 여가문화 저변 확대
- 재난 발생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 역량강화 계획

## 02 체육시설

- 공원, 폐교 등을 활용하는 등 기존시설 정비 및 이용
- 수변 및 공원·녹지지역에 생활체육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체육복지센터 등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 생활주변공간을 이용한 소규모 체육기반시설 개발을 통해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생활체육 정착

【표 3-9-4-4】 문화·체육시설 수요 추정

구 분		단 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		인	83,213	85,268	87,957	89,860	90,930
문 화 시 설	공공도서관	1개소/3만인	2	3	3	3	3
	박 물 관	1개소	1	1	1	1	1
	공 연 장	1개소/4만인	1	2	2	2	2
	시 민 회 관	1개소/10만인	1	1	1	1	1
체 육 시 설	문 화 원	1개소/10만인	1	1	1	1	1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3만인	3	3	3	3	3
	종합운동장	1개소/10만인	1	1	1	1	1
	공공체육시설	개소/1.5천인	59	59	59	60	61

## 3. 실천계획

## 01 문화시설

## 차별없는 문화서비스 제공

- 모든 시민이 동일한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약 계층의 문화서비스 제공이 절실함
- 기존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문화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지역 문화 기반시설인 북카페, 휴카페와 복지과 문화, 스포츠가 결합한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확충하여 지역단위의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특화된 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문화시설의 확충에 앞서, 문화·예술, 공연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각 장르별 특성에 기초한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지원 확대
- 문화인력 양성과 지역문화예술 동호인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02 체육시설

##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실천운동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생활체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 공공체육시설의 정비 및 확충

-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축구공원 등 새로운 체육시설이 조성
- 기존 시설과 더불어, 시민들의 여가 활동증진을 위해 소규모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 시설의 확충 및 신설

## 해양·산악관련 체육시설의 개발

-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해양 체육시설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 대체휴일제도, 52시간 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휴양인구 증가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마련
- 풍부한 산악지형을 활용한 트래킹코스, 암벽등반장 등 생활체육시설 도입으로 속초 시민의 특성을 활용한 체육시설도입 추진